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57

발의연월일: 2020. 12. 30.

발 의 자: 박찬대·고용진·이성만

정일영 • 윤관석 • 신동근

허종식 · 서동용 · 이규민

김교흥 • 맹성규 • 홍성국

권인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술, 관련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전문대 졸업생 입직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등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부족하고,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의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어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수준을 고도화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평생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학을 도입·운영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 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등).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및 제5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인가를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
	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
	<u>다.</u>
<u> <신 설></u>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의2
	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
	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
	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
	<u>다.</u>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
	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
	<u>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u>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인가 를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